

2026. 3. 1.자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전보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1. 근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5장(전보임용)

「2026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2. 목적

공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교교사(유치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교사(유치원)의 전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유치원경영에 기여토록 하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근무의 안정을 기하여 유치원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

3. 방침

가. 본 계획은 2026. 3. 1.자 공립특수학교의 특수학교교사(유치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교사(유치원)의 전보에 적용한다.

나. 공정한 인사관리로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특수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

4. 일반원칙

가. 교사 전보자의 정기 전보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교사(유치원)의 정기 전보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 특수학교교사(유치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교사(유치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전역을 인사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라. 공립특수학교의 전보 대상자가 공립특수학교로 전보하는 경우, 전임교(직전 근무교)외 학교(기관)를 희망하여야 한다.

- 마. 2026. 3. 1.자 현재 휴직·파견 및 직위해제 중인 교사는 전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바. 정기전보 대상자는 비정기 전보 대상자보다 우선 배정한다.

5. 전보세칙

가. 정기 전보 대상

- 1) 현임교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교사(유치원)로서 현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사
- 3) 중간분리특수학교(유치), 신설특수학교(유치) 및 학기 중 정·현원 재조정 등으로 전보된 교사 중 현임교 근무 경력의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교사는 5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기 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 교사는 현임교 근무 경력으로만 정기 전보 대상자로 결정한다.

나. 비정기 전보 대상

- 1) 현임교(특수교육지원센터)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기관장)이 전보 내신 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 가) 통근거리 20km 이상인 교사
 - 나) 정·현원 조정이 불가피한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해당 교사
 - 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공립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 라) 공립특수학교에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의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 2) 현임 특수교육지원센터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기관장이 전보 내신 한 교사는 공립특수학교 또는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으로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 3) '1)항 다), 라)호'와 '2)항'에 의해 비정기 전보된 교사는 '1)항 다), 라)호'와 '2)항'의 사유로 연속하여 비정기 전보할 수 없다.

4) 현임교(특수교육지원센터) 1년 미만 근무한 교사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기관장)이 전보 내신 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나)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전보하여야 한다.

가) 징계처분 된 교사

나)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사

다) 직위해제 후 복직된 교사

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

단, 전보 요청 전에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함

마) 금품수수 행위,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바) 당해 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사) 기타 교내·외에서 학습권 및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교사

다. 근무지 배정

1) 공립특수학교 배정은 특수학교별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순에 따른다.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본인의 희망,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 교육 경력, 보직교사 경력,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나) 공립특수학교 교사

본인의 희망, 교육 경력, 보직교사 경력,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공립특수학교 총 근무기간이 적은 교사를 우선함)

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본인의 희망, 공립유치원 계속 근무 경력, 교육 경력, 보직교사 경력,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정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교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순에 따른다.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본인의 희망, 교육 경력, 거주지, 보직교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나) 공립특수학교 교사

본인의 희망, 교육 경력, 보직교사 경력,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단, 공립특수학교 총 근무기간이 적은 교사를 우선함)

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본인의 희망, 교육 경력, 거주지, 보직교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3)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배정은 다음 순에 따른다.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2026. 3. 1.자 유치원교사 전보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교육장의 협조를 받아 행한다.

나) 공립특수학교 교사

「2026. 3. 1.자 유치원교사 전보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교육장의 협조를 받아 행한다.

라. 전보 유예

1) 공립특수학교의 전보 유예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정기 전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로서,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 때 다음 각 호는 각각 별개의 호로 한다.

가) 학교 경영상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요청한 교사는 전보 대상자의 20% 이내에서 2회(총2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는 정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다) 소속 교사의 80% 이상이 동시에 전보될 때, 전보 대상자의 20% 이내에서 학교장이 전보 유예를 요청한 교사는 1회(1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교당 2회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전보 대상자 본인 및 자녀, 동거하는 배우자·부모·배우자 부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교사
2. 전보 대상자 본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

마) 임신 28주 이상(전보 시행일 전일 기준) 또는 만 3세 미만(전보 시행일 전일 기준) 자녀 양육 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교당 1회(1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기 전보 대상 교사 중 본인의 희망을 받아 기관장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유예 요건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전보 유예 기간은 3회(총3년) 이내로 한다.

6. 행정사항

가. 본 전보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 3. 1.자 유치원교사 전보 원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나. 2013. 3. 1. 전보부터 공립특수학교 또는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보할 수 있다.

다. 휴직·파견 기간은 거주 기간 및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파견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한다(2023. 3. 1. 자 육아휴직부터 시행).

라.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전보 대상자 선정 시 근무 기간에는 포함하고, 교육경력 산정 시 근무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마. 보행상 장애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에 따른 판정과 ‘해당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